#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 거생활 지원을 위해「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」신 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4월 30일

# 대전광역시장

1.		L	업	7	Ш	0
1.	Л	Г	Ŭ	J	П	Д

□ 사 업 명 :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□ <b>사업대상</b> : 19 ~ 39세의 청년 및 청년부부
□ <b>신청기간</b> : 2024년 5월 3일 ~ 11월 30일까지 (예정) / 상시 접수
※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(20건),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
□ 주요내용
○ <b>대출하도</b> : 최대 1억워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-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하나은행)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
-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\_COFIX(6개월) + (기산금리) 2.3% (대출실행일 기준) \*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.5%
- 취급은행 : 하나은행 (6개 지점)
  - 대전시청지점, 갈마동지점, 오정동지점, 유성구청지점, 대흥동지점, 가오동지점
- □ **대출용도** : 주택임차보증금
- □ **대출기간**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2회 연장가능\*, 최장 6년 이내)
- ※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
- ※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

- \* 기한 연장 요건
-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,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

## 2. 자격요건

- □ 신청자격: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· 재직하는 19 ~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
  - (1)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    -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
    - 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
    - ③ 미혼 청년
  - (2) 취창업자: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    -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
    - 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
    - ③ 미혼 청년
  - (3) 청년부부 : 우리 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
    - 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
#### <신청자격 유의사항>

- \*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
- \*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
- \*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(포기서 제출자 제외) 사업지원 불가
- 2023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참여자는 사업 참여 가능
- 선정 후 본사업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
- \*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(기존 거주 주택 불가)
- 공고일 이전 계약이지만 선정 후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- \*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- \* 소득 산정 시 성과급, 제수당 등도 포함
- \* 세전 소득 기준 : 원천징수영수증 16번(계), 21번(총급여) 항목 참조

### □ 대상주택

- $\circ$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.1% 이하의 반전·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
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※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
- 임대인이 조합·문중·교회·사찰·임의단체인 경우·신탁등기인 경우 지워 불가
- \* 전월세 전환율 6.1% 적용예시
  - <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 >
- 예시 : 월세가 50만원, 보증금이 50,000,000원일 때 전세금 계산
- 전세금 = [(월세×12개월) ÷ 전월세전환율] + 보증금
  - = [(500,000원×12개월) ÷0.061] + 50,000,000 = 148,360,650원
- ※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'전월세전환율 계산기' 검색하여 계산 가능

# 3. 신청 및 대출절차 /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



- ※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개인신용도/소득유무/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-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,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

## 4. 신청접수 및 선정

□ 공고기간 : 2024년 4월 30일 ~ 5월 10일 까지

□ **신청기간** : 2024년 5월 3일 ~ 11월 30일 까지 상시 신청

※ 일일 신청건수 20건 제한(오전 09:00~, 평일 신청, 국경일·공휴일 신청 불가)

□ 신청방법 :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djhousing.or.kr)

온라인 신청(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)

- ※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·촬영(PDF 또는 JPG파일) 후 온라인 신청,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(압축해제 및 보안해제) /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
- 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

### □ 제출서류

-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
  - \*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
  - ※ 사실증명원, 소득금액 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2023년도 귀속분 제출

#### <공통 제출 서류>

제출서류		비고	
공통서류	지원신청서		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▸ 온라인(https://www.djhousing.or.kr) 신청서	
	지원신청자 의무사항	작성 및 활용 동의	
	자격요건 확인각서		
	주민등록등본	·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› 발급대상자 : 본인(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	
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▸ <b>조회조건 : 전체</b> 이력 출력본 필요 ▶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	

# <신청자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>

제출서류		มอ			
추가 서류	대학 (원)생, 취업 준비생	재학증명서	<ul><li>▶ 휴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가능</li><li>▶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</li></ul>		
		사실증명원 (2023년 귀속분)	<ul><li>'소득신고 사실없음' 사실증명원</li><li>※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</li></ul>		
		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(2023년귀속분)	▶ 부모 모두 제출	▶ 부모의 이혼·사별 등 시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 ★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	
	취 · 창업자	재직증명서	<ul><li>→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</li></ul>		
		사업자등록증	·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(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)		
		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2023년 귀속분)	<ul> <li>▶ 근로자의 경우</li> <li>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</li> <li>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</li> <li>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급여명세서(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)</li> <li>※ 회사 직인필수,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</li> </ul>		
			<ul> <li>▶ 자영업자의 경우</li> <li>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2~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</li> <li>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</li> <li>※ 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</li> </ul>		
				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	
	청 부	재학증명서/재직증명서	지증명서 <b>수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</b>		
		사업자등록증	·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(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)		
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▶신청인의 배 스캔 첨부	우자는 해당 서류 출력 후 서면동의 하여	
		사실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(2023년 귀속분)	<ul> <li>근로자의 경소득신고 등안 될 경우</li> <li>①갑종근로소</li> <li>자영업자의 경소득금액증명</li> <li>명원 혹은</li> <li>프리랜서의 경</li> </ul>	경우 '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' 제출 우 등으로 국세청에서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<b>직장에서 발급</b> 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등증명서 ②급여명세서(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) 경우 원과 함께 22~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로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	
※ 다	  출보증	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 <i>루</i>	 류를 요청할 수	있음	

- ※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(6개 지점)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

## □ 대상자 선정

- 선정방법: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(서류보완일)로부터 7일 내외 선정
  - ※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,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- **선정결과 알림 : 개별통보**(문자알림서비스 제공)
  - ※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, <u>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</u> 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
-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
  - ※ 단,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www.djhousing.or.kr)에 포기 신청
- □ **참고사항** :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(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,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) 신청자 부담으로 함
- □ 선정취소
  -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**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**
-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③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

## 5.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(분기별)

- □ 확인내용 : 주소지(임차지) 실거주 여부 / 주택소유 여부 /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
- □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 사항
  -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**위반기간 이자 미지원 및 지원종료**
  - 기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
  - ※ 자격요건 위반사항 발생 즉시 대전시에 통보 후. 은행을 통해 대출금 전체 상환 필요

# 6.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

□ 이자지원 중단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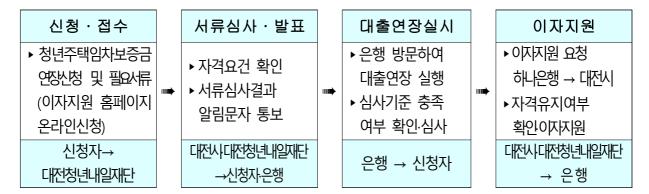
대출기간 중	기한연장 시
	※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
①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	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 만39세 초과(대출기한)
  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	② 소득 요건 초과
	③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
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	④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
④ 임대차계약 종료(목적물 변경 제외)	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
	⑥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

-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확인(임차지 거주여부, 주택소유 여부, 주거급여수급 여부) 후,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이자지원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,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.

### □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

- 연장신청 : 전·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
  - ※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(https://djhousing.or.kr)에 연장신청 및 서류 제출
- 연장조건 :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
  -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
  -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
  - ③ 나이,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
  -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
  - ⑤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상 상환
- **연장 계약기간이** 2년 미만인 경우, 연장은 기간이 아닌 **횟수**로 판단
  - ※ 만료일에 급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,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
  - ※ 기한 연장 불가 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연장 조건 필수 확인

### ○ 절차



# 7. 기타사항

-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**생애** 1회로 제한합니다. <u>추가 대출 및 전액</u>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,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거나, 은
   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사업자 선정 문의	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
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 ☎ 042-719-8431 대전광역시콜센터 ☎ 042-120	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점 ☎ 621-1111, 갈마동지점 ☎ 522-1111 오정동지점 ☎ 632-1111, 유성구청지점 ☎ 863-1111 대흥동지점 ☎ 253-1111, 가오동지점 ☎ 721-1111

※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